

관세평가

【문제 1】 다음 거래내용에 기초하여 각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 거래내용 >

- 국내 수입자 K사는 미국 소재 수출자(제조자) S사로부터 액체 화학원료를 다음 조건으로 수입하였다.
 - Unit Price: USD 2,300/ton
 - Quantity: 200ton
 - Incoterms: FOB NewYork Port
 - Payment: T/T(총 금액의 50%는 출항일에, 잔금 50%는 입항일에 지급)
- K사는 위 거래조건의 액체 화학원료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다음의 요소를 S사에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 액체 화학원료 제조과정에 사용되는 화학적 촉진제(수입물품에 잔존하지는 않으나, 생산시 필수적으로 사용되며, K사가 국내에서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특허기술로 생산되었다): 10,000,000원
 - 액체 화학원료 생산에 필요한 특허기술(일본 국적 엔지니어가 서울 소재 K사 연구소에서 완성한 기술로 K사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 30,000,000원
- 한편, K사는 화물 운반을 위하여 탱크컨테이너(ISO tank)를 유럽 소재 임대회사로부터 별도로 임차하여 비용을 지급하였다. 운송은 항해용선계약에 따르고, 운임 등 운송관련 비용은 S사에 지급하는 금액과는 별도로 모두 K사가 부담한다. 선사(포워더), 임대회사, 국내운송사가 발급한 비용 명세는 다음과 같다.

연번	명세서 항목	금액(원)
①	기본 해상운임(선적항 → 수입항) * 수입항 하역비 2,100,000원이 포함되어 있고, 구분 기재됨	45,000,000
②	유류할증료(Bunker Adjustment Factor)	3,000,000
③	공선회조료(Dead Freight)	2,200,000
④	탱크컨테이너(ISO tank) 임차료	20,000,000
⑤	선적자재비·선박개장비(Stowage & Lashing)	2,500,000
⑥	선적항 체선료(Demurrage at Loading Port)	4,600,000
⑦	통화할증료(Currency Adjustment Factor)	1,000,000
⑧	수입항 체선료(Demurrage at Discharge Port)	3,700,000
⑨	수입항 도선료·예선료 * 본선이 부두에 접안하여 양륙준비를 완료하기 전에 발생됨	1,500,000
⑩	내륙운송료(수입항 → K사 국내공장)	4,830,000

- 생산지원요소는 상기의 최초 수입 건에 전액 가산하기로 한다.
- 해당 용선계약에 따라 항해 중 유가변동에 따른 운송인의 손실 보전비용인 유류할증료, 항해 중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보전비용인 통화할증료는 K사가 선사(포워더)에 지급한다.
- 선박의 출항일, 입항일 및 입항전 수입신고일은 다음과 같다.
 - 출항일: 2026. 5. 8.(금)
 - 입항전 수입신고일: 2026. 6. 6.(토)
 - 입항일: 2026. 6. 8.(월)
- 관세법령에 따른 과세환율은 다음과 같다.

적용기간	원/USD
2026. 5. 3.(일) ~ 5. 9.(토)	1,450.00
2026. 5. 31.(일) ~ 6. 6.(토)	1,550.00
2026. 6. 7.(일) ~ 6. 13.(토)	1,500.00

※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나 내용 외에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물음 1) 관세평가 목적상 실제지급금액에 가산되는 생산지원비용에 대해 기술하고, 위 거래내용에서 제시된 각 생산지원요소의 가산 여부에 관하여 관세평가 근거를 포함하여 기술하십시오. (8점)

물음 2) 위 명세의 각 항목에 대하여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조정해야 할 운임 및 운송관련 비용의 산출과정과 그 근거를 포함하여 기술하십시오. (12점)

물음 3) 운임은 운임명세서 등 서류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정물품의 경우 선박회사 등이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운임을 해당물품의 운임으로 산출할 수 있다. 통상의 운임을 적용할 수 있는 특정물품과 그 법적 근거를 기술하십시오. (5점)

물음 4) 위 거래내용을 바탕으로 제1방법에 따른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실제지급금액, 가산금액, 공제금액의 3가지로 구분하여 기술하고, 최종 과세가격을 산출하십시오. (5점)

【문제 2】 다음 거래내용에 기초하여 각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거래내용>

- 국내 수입자 A는 독일에서 아래와 같은 중고 승용차를 수입하였다.
 - 독일산 승용차 신차가격: 1억 5천만원
 - 차량용도: 자가용
 - 최초 등록일: 2024.1.1.
 - 수입신고일: 2026.6.13.
- 다음은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제2호의 일부이다.

<승용차 및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의 감가상각 잔존율표>

(단위 : %)

차종구분		내용연수	경과연수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12개월
승용차 및 화물 자동차	비 영업용	12년	0	100.0	97.50	95.00	92.50	90.00	87.50	85.00	83.63	82.27	80.90	79.53	78.17
			1	76.80	75.82	74.83	73.85	72.87	71.88	70.90	69.92	68.93	67.95	66.97	65.98
			2	65.00	64.11	63.22	62.33	61.43	60.54	59.65	58.76	57.87	56.98	56.08	55.19
			3	54.30	53.48	52.67	51.85	51.03	50.22	49.40	48.58	47.77	46.95	46.13	45.32
			4	44.50	43.73	42.97	42.20	41.43	40.67	39.90	39.13	38.37	37.60	36.83	36.07
			5	35.30	34.58	33.85	33.13	32.40	31.68	30.95	30.23	29.50	28.78	28.05	27.33
			6	26.60	25.95	25.30	24.65	24.00	23.35	22.70	22.05	21.40	20.75	20.10	19.45
			7	18.80	18.34	17.88	17.43	16.97	16.51	16.05	15.59	15.13	14.68	14.22	13.76
			8	13.30	13.03	12.75	12.48	12.20	11.93	11.65	11.38	11.10	10.83	10.55	10.28
			9	10.00	9.92	9.83	9.75	9.67	9.58	9.50	9.42	9.33	9.25	9.17	9.08
			10	9.00	8.92	8.83	8.75	8.67	8.58	8.50	8.42	8.33	8.25	8.17	8.08
			11	8.00	7.92	7.83	7.75	7.67	7.58	7.50	7.42	7.33	7.25	7.17	7.08
			12	7.00											
	영업용	6년	0	100.0	97.00	94.00	91.00	88.00	85.00	82.00	77.70	73.40	69.10	64.80	60.50
			1	56.20	55.38	54.57	53.75	52.93	52.12	51.30	50.48	49.67	48.85	48.03	47.22
			2	46.40	45.17	43.93	42.70	41.47	40.23	39.00	37.77	36.53	35.30	34.07	32.83
			3	31.60	30.76	29.92	29.08	28.23	27.39	26.55	25.71	24.87	24.03	23.18	22.34
			4	21.50	20.93	20.37	19.80	19.23	18.67	18.10	17.53	16.97	16.40	15.83	15.27
			5	14.70	14.31	13.92	13.53	13.13	12.74	12.35	11.96	11.57	11.18	10.78	10.39
			6	10.00											

※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나 내용 외에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물음 1) ①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5, ②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각각 기술하시오. (15점)

물음 2) 국내 수입자 A가 수입한 중고 승용차의 과세가격 산출과정과 그 근거를 기술하고, 과세가격을 산출하시오. (5점)

【문제 3】 다음의 각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물음 1) 관세법령상 동종·동질물품, 유사물품,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에 관하여 기술하고, 관세법 제33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 방법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7점)

물음 2) 관세법 제33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의 의미, 국내판매가격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물품의 순서, 이윤 및 일반경비의 산출방법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8점)

물음 3) 관세법 제33조제1항제1호의 금액(국내판매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려사항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5점)

물음 4) 세관장이 관세법 제33조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의 특성, 거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동종·동류의 수입물품 선정시,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33조에서 규정한 “산출대상 품목군 등의 결정” 방법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10점)

【문제 4】 다음 거래내용에 기초하여 각 물음에 답하십시오. (20점)

<거래내용>

국내 수입자 K사는 미국 제조업체 M사로부터 특수보안장비를 수입하였다. K사와 M사는 상호 법률상 동업자 관계이다. 우리나라 세관 당국은 K사가 수입한 특수보안장비의 과세가격 적정성에 대한 세액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K사와 M사 간의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쳐 수입신고한 거래가격은 배제되었다. 한편, 해당 특수보안장비의 과세가격 결정을 위해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2조의 적용을 검토하였으나, 적용요건에 부합하지 않았다. 이에 K사는 세관 당국에 관세법 제34조에서 규정한 방법을 우선 적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M사는 세관 당국에 관련 자료 제출을 협조하기로 하였다.

○ K사의 특수보안장비 수입과 관련된 거래조건 및 관련 비용은 다음과 같다.

- Unit Price: USD 100/ea
- Quantity: 1,000ea
- Incoterms: CIF Incheon Airport
- 미국 내 발생한 내륙운송비: USD 500
- 인천공항까지 항공운임 및 보험료: USD 3,000

○ M사의 협조로 세관 당국에 제출한 손익계산서의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매출수익: USD 20,000,000
- 매출원가: USD 12,000,000
- 판매비와 관리비: USD 5,000,000
- 영업이익: USD 3,000,000

○ M사가 제출한 특수보안장비의 제조원가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직접재료비: USD 40/ea
- 직접노무비: USD 10/ea
- 제조간접비: USD 2/ea

- 우리나라 세관 당국은 K사가 해당 특수보안장비의 생산을 위해 국내에서 수행된 디자인(디자인 개발비용: USD 10,000)을 M사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K사와 M사의 거래조건상 해당 디자인 비용에 대해 M사가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다.
-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미국 내 동종물품·동종산업군의 제조사가 통상적으로 가지는 이윤 및 일반경비는 전체 생산 관련 비용의 80%로 확인되었다.
- 해당물품 수입통관시 적용된 과세환율 : 1,500원/USD

※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나 내용 외에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물음 1) 관세법 제34조에서 규정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관하여 기술하십시오. (5점)

물음 2) 위 거래내용을 바탕으로 관세법 제34조에 따른 과세가격의 산출과정과 그 근거를 기술하고, 과세가격을 산출하십시오. (10점)

물음 3)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기술하십시오. (5점)